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대처요령 안내

1. 추진배경

-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신고 방법 등 대처요령 마련 안내**

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동시에 신고 될 수 있는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3. 아동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할퀴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하는 행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세계 흔드는 행위, 신체부위를 묶는 행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는 행위, 던지는 행위 등
-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약물 등을 사용해 상해를 가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 고함, 위협, 무시, 모욕, 원망, 거부,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하는 행위 등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
- 정서적 위협 : 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집 밖에 세워두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등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 성적 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강요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또는 아동과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유기: 적극적으로 아동을 버리는 행위 및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고 떠나는 소극적인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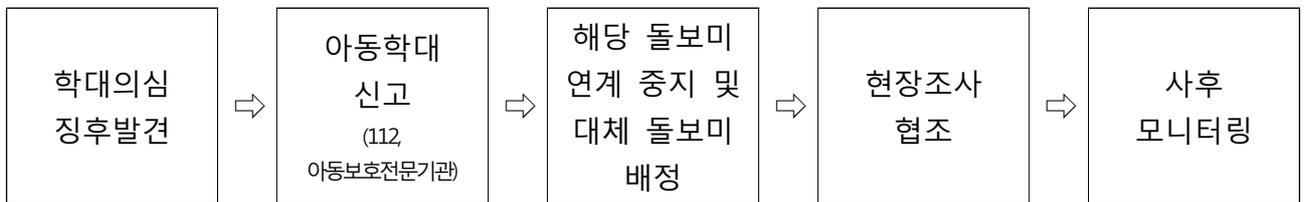
○ 방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 하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미인정 결석을 방치 하는 행위(*미인정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상 결석)
-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장애아동의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

4. 아동학대 발생 시 센터 대응방법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의거 "시흥시가족센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하는 신고 의무기관입니다.

가) 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바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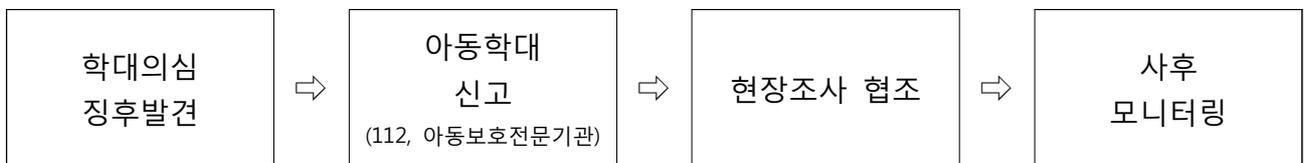
- 아동학대사례관리사 지효원 (070-4149-6355)

☆ 학대피해아동·가족 지원

- 학대피해아동·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지원(시흥시가족센터)
-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재 학대 발생 여부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기간 중 월 1회 이상

☆ 돌보미 조치 : 돌보미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나)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발생시 센터 대응방법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시흥시가족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실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적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 아이돌보미 대상 정서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아이돌보미의 소진 예방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합니다.
- 모니터링 실시: 아이돌보미와 아동의 친밀감 형성과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항목	체크란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보호자가 아동이 때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격 행동 및 해박하고 조속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접수 전, 체크리스트 항목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당 가족과 국민들께 큰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의 발견, 신고, 처리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12)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이돌봄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돌봄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과거 사례를 포함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경우, 112(24시간 접수)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작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아이돌봄 상황에 적용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	체크항목
1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아이돌보미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3	아이돌보미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
4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5	성학대로 의심될 신체적 흔적이 있다.
6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7	아동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인다.
8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

위의 문항 중 1개 이상 '예'라고 체크되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또는 아래 접수하기를 눌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점검 특별신고 운영기간 : 4.8 ~ 6.30

※ 실태점검 특별신고 전화 : 02-3479-7760~7761 (평일 9:00~18:00)

※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즉시 **112(24시간 운영)**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